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51,877,883	22,556,336
일반회계	653,778,656	19,613,360
특별회계	98,099,227	2,942,977
공기업특별회계	82,178,679	2,465,3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390,677	821,72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2,375,741	1,271,27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412,261	372,368
기타특별회계	15,920,548	477,616
강릉시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547,240	16,417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37,816	43,134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75,113	95,253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422,670	12,680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4,134,621	124,039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3,507,390	105,222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0,000	600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675,698	80,271

제 2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8,726,61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5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것으로 한다.